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I. 들어가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3. 6.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18개 법안 중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추려서 담은 법률입니다.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아 그동안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을 메우고자 입법되었습니다. 국회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1단계 입법을 추진한 뒤,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II. 주요 내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우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정의했습니다(제2조 제1호). 이 때, 중앙은행가상화폐(CBDC)는 가상 형태의 법화(화폐)이므로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제2조 제1호 사목). 민간 가상자산은 법화가 아니며, 민간 가상자산과 CBDC를 엄격히 구분해 정책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됩니다.

2. 이용자 보호

① 예치금의 보호(제6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와 중개, 영업행위와 관련한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

② 가상자산의 보관(제7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전자지갑주소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의 가입 등(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불공정 거래 금지

①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가상자산사업자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인가·지도·감독권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가상자산사업자 등과의 계약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등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시세조종 금지(제10조 제2항)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짜고 매매하는 행위,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부정거래 금지(제10조 제4항)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자기발행가상자산 거래 금지(제10조 제5항)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제11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4. 감독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였으며(제13조),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또한,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제16조). 자본시장법에서도 금융회사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인정되는바, 이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권한 행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 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시 처벌

특히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제17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이 규정되었습니다(제19조).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 발견 시 시정명령이나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5조).

6. 기타

이 밖에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제12조). 또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되었습니다(제5조).

III. 향후 예상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 거래와 관련해 특별한 규제가 없는 가상자산 시장 및 그 거래 양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규제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규제와 유사하게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